

## Korean Tax Update

January 2019, Issue 55

### [조세뉴스]

---

#### 기획재정부,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전문보기]

기획재정부는 '18.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블록체인 등의 16개 기술을 추가하고, 문화산업의 창작 R&D에 사용되는 서체·음원·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의 대여·구입비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또한 지역수취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 세액공제 하용 범위를 확대하고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식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9.1.8.~1.29.),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임.

#### 국세청,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보기]

국세청은 9일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함. 경제규모 확대로 기업의 수입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인 정기순환조사 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1천억원(현행)에서 중소기업 규모(1천 5백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또한 공익법인 관련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예규·판례]

---

#### [판례1]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 두 42883 판결

- 원고가 아일랜드 법인에 지급한 사용료 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아일랜드 법인을 지배하는 미국 법인이므로 「대한민국과 아일랜드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종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을 적용할 수 없으며, 나아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자가 특허물건을 독점적으로 생산, 사

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을 등록하여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특허실시권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한미조세협약의 해석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관념할 수도 없으므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 [판례2]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 당시 법인등기에 대하여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함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 두 31538 판결

- 구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세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본점 등의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본점 이전에 관한 법인등기'가 '법인설립에 관한 법인등기'로 간주되거나 위 각 법인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이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닌 점,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구 지방세법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30조제2항은 하나의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하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법인설립 및 자본증가 당시 그에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을,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함에 따른 본점 이전 관한 법인등기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등록면허세의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함.

### [판례3]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과정에서 그에 따른 대여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업으로 보아 위 대여이자 상당액을 면세사업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 두 60662 판결

- 은행업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나, 이와 달리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음.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원고가 받은 이 사건 대여이자 전부가 곧바로 비과세사업에 해당하

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중 비과세사업에 안분되는 매입세액을 가려낼 수 없음.

#### [판례4] 신설법인 최대주주 예정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법인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 두 40941 판결

-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3제1항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상세히 정한 법인의 주식 취득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밖에 법인 설립 전 발기인의 주식 인수 등 다른 유형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이후 상장으로 이익을 얻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바, 쟁점 규정은 법인설립 전 발기인이 자금을 증여받아 신설 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규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쟁점 규정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취득 등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유추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 [판례5]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이중과세금지·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법 2018. 11. 30. 선고 2018 구합 54941 판결

-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종전 부과처분들과 후행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일 뿐만 아니라, 매년 과세대상을 건의 가액의 변동,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그 과세표준도 달라지고, 과세표준에 따라 그 세율도 달라지는 등 매년 그 세액이 달라짐으로써 그 과세처분에 대한 다툼의 내용도 서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록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이 동일하고 그 쟁점이 같다고 하여도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지나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또한 이 사건 쟁점규정의 적용으로 납세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의 일부가 공제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먼저 걷은 후 국가가 주택, 토지를 합산하여 누진율을 적용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상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비례의 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님.

## [심판례1] 2014. 10. 1. 이전 발행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발생한 행사차익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 2018 서 3605, 2018. 11. 29.

- 2014. 9. 26.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성과급에 추가하면서 그 부칙에서 2014. 10. 1. 이전 발행분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손금산입대상이 되는 성과급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 명백하고,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나목은 기준보다 손금의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취지의 창설적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4. 10. 1. 이전에 발행된 이 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익이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례2] 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수탁 받은 약속어음을 출자하여 취득한 상환우선주로부터 수취한 분배금은 수익자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심 2018 서 4113, 2018. 12. 3.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의 입법목적이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까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포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 [심판례3] 국책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수익자와 수탁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이 가능함

조심 2016 서 3535, 2018. 11. 27.

- 신탁의 이익에 대한 분배금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다만, 청구법인은 정책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책은행의 기능을 하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채무자의 경영악화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후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채무자가 청구법인의 신탁부에 약속어음을 신탁할 당시 청구법인의 신탁부가 이를 제3자에 현물출자하여 발행되는 상환우선주를 교부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신탁부는 영업을 인가받은 근거법이 「은행법」과 「신탁법」으로 상이할 뿐 청구법인과 신탁부가 별개의 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 내의 부서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환우선주 분배금에 상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함.

## [심판례4]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18 중 3889, 2018. 11. 28.

-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 이에 기초한 과세방법, 공제·감면 및 비과세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할 것인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별도의 불복절차 없이 납부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재산세가 확정된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례5] 청구법인들이 국외에서 제공한 선박임대용역 및 선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조심 2017 서 5015, 2018. 12. 4.

- 청구법인들이 등록된 파나마 등에는 인적·물적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들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 동 법인들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점, 재화의 공급 장소인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는 실물의 이동이 아닌 점유권의 이전이 시작되는 장소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쟁점선박의 공급은 청구법인들의 국내사업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의 쟁점용역 제공 및 쟁점선박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심판례6]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주식대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심 2018 서 1627, 2018. 12. 05.

- 주식대차거래는 소비대차 거래에 해당하고, 차주로부터 대차주식을 조기에 반환받을 권리 또는 대차기간 중 대차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을 차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대주에게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며 주권에 기한 각종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임대차와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주식을 대여하거나 반환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용역의 공급의 공급이 아닌 재화(주식)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할 것인데 주식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개별

대차거래의 차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실적으로 공급시기별 거래상대방 및 공급가액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대여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심판례7]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음

조심 2018 서 3400, 2018. 12. 06.

- 2013. 2. 15.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하여 제162조의2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제외하는 자를 규정한 제7호를 종전에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에서 이에 괄호를 추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하였는바, 이는 동 시행령의 개정취지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소득에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양도차손 등으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인 점, 소득금액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한 것으로 그 금액이 양과 음의 두 방향 모두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을 양의 소득금액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양의 소득금액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만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의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심판례8] 중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중국에서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원천징수·납부한 세액은 국내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조심 2017 서 4060, 2018. 12. 11.

- 중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중국 거주자에 대출 또는 중국 내 다른 지점에 예금을 하고 수취한 이자에 대하여는 한국에 과세권이 있는바, 중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되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사실상 한국의 과세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한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함. 또한 중국에서 원천징수납부된 세액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 본점의 법인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며, 설령 중국은 기납부세액공제 장치가 없다 하더라도 중국의 제도 미흡을 이유로 한국의 과세권이 침해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이자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심판례9] 카드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조심 2018 서 4740, 2018. 12. 12.

-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 보험판매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보험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보험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를 과세함이 교육세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심판례10] 청구법인이 해외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국내 사용에 따른 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조심 2018 소 4823, 2019. 1. 3.

-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상표사용권 등을 승락받고 해외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게 된 것이며 그 액수도 다른 용역의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카드 결제금액에만 비례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해외 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별도의 대가를 다른 수수료 항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산업상·상업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의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사용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해외 신용카드회사에 분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료소득이 아닌 것으로 구분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분담금은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 판단됨. 또한 청구법인이 승락받은 상표사용권 등을 기초로 국내에서 카드사용자들에게 관련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한 점, 해외 신용카드회사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국내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해외 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한 용역이 국내에서 사용·소비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쟁점분담금과 관련된 용역의 제공지가 국외라는 것만 가지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고 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예규1]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계산과 관련하여 제1항의 주식 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특정법인이 결손법인 등인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5항제1호의 주식 등의 비율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지 않음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90, 2018. 11. 29.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5항제1호에 따라 특정법인이 결손법인 등인 경우 특정법인의 이익에 곱해야 할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예규2]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사업자 부담분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 2018. 12. 26.

-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되, 할인대금은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분담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예규3]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자본시장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였다면, 영업권을 별도로 분리하여 평가하지 않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대납액과 합병교부주식의 시가 상승분을 합병대가에 포함하여 계산된 합병매수차손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89, 2018. 12. 26.

-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 함에 있어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대가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이월결손금이 없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제3항에 따른 합병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제2항의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합병법인은 그 차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합병대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나목의 합병법인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 등과 합병비율 결정시점과 합병등기일 사이 합병교부주식의 시가 상승분이 포함되는 것임.

### [예규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위탁자별로 합산하는 경우 위탁자가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인지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인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400, 2018. 12. 26.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0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위탁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되는 것임

## [예규5]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8, 2018. 12. 27.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 [예규6] 내국법인에 대한 적격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에 있어 지분율이 동일한 주주는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에서 규정한 주식의 의무보유 규정 적용 대상인 지배주주로 보아야 함

서면-2018-법인-2648, 2019. 1. 3.

- 내국법인 및 다른 내국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분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으며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제2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8항에 따른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것임

## [예규7] 공장건물 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는 구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함

서면-2018-법인-2631, 2019. 1. 3.

- 공장건물 위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설비를 감가상각 시, 공장의 부속설비(자본적지출)로 보아 공장의 잔존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함.

## [예규8]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자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 2019. 1. 3.

-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지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자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예규9] 외국신용카드가 국내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받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 2019. 1. 8.

- 외국인이 외국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국내 신용카드업자가 국내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외국 신용카드발급사가 국내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에서 사용한 결제대금을 국내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하면서 공제하는 발급사보전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예규10]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 1. 15.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coe@kr.kpmg.com](mailto:kr-fmtaxcoe@kr.kpmg.com)